

(사)한국건축역사학회 송현논문상 시상 규정

제정 2012. 10. 1

개정 2017. 9. 9

개정 2018. 11. 16

개정 2024. 11. 3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송현(松峴) 김일진(金一鎭) 교수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 건축사학 및 이론 부문 학문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에게 수여하는 '송현논문상'(이하 논문상)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시상 대상)

논문상은 한국건축역사학회(이하 학회) 논문집인 <건축역사연구>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 가운데, 건축역사이론 분야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정회원에게 시상한다.

제3조 (심사위원회)

-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.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, 학회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심사위원회는 직전(直前) 회장, 학술부회장과 논문편집위원장,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건축역사학과 이론 전 분야의 전공자를 포괄해야 한다.
-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.

제4조 (시상 절차와 방법)

- 후보자는 전년도 10월호 논문집부터 당해 연도 8월호까지의 학회 논문집(건축역사연구)에 발표된 학술 논문의 저자(공저자 포함)로 한다.
- 심사위원회는 2편 내외의 분야별 1차 후보작을 선발하고, 후보작 가운데 분야와 상관없이 최우수작 1편의 연구자를 수상후보자로 선정한다. 단,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해당년도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. 그리고 이 상(賞)의 수상자에게 중복하여 시상해서도 아니 된다.
-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, 심사과정을 기록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수상후보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.
- 시상은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 개최 공고시 수상자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- 수상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.

제5조 (재원)

송현논문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- 논문상 기금은 송현 김일진 교수의 출연금 1억원 및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한다.
- 시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송현논문상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얻은 이자 수입과 유족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며,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.
- 송현논문상 기금 및 재원의 운용 및 관리는 한국건축역사학회가 담당한다.

<부칙>

- 시상은 2002년도부터 시행한다.

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.